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시정권고)

### □ 민원 제목 : 하수관로 정비 공사 관련 사유지 보상 요청

####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 내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한 「○○○ 하수관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업구역 내 위치한 안산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번지 토지(전 ○○○㎡) 소유자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청 안산시의 감독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감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관로 매설 후 원상복구 및 재포장 되는 공사내용과 사유지 사용에 대한 보상비 예산이 미반영되었음을 안내받고, 하수관로 매설공사 시행 동의를 위한 '관로시공 허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미확보 등을 사유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명확한 행정절차 없이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피신청인의 행정처리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사유지 사용에 대한 토지 보상을 원한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이 사건 공사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하수도법 제10조의2가 신설(2021.1.5.)되기 전인 2018년부터 설계 용역을 진행·시행된 사업으로, 보상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사유지가 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하수관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해당 구간은 현재 상수도, 전력 등이 매설되어있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된 공사

및 추후 진행할 공사 구간 모두 사유지가 포함되어 특정 구간만 사유지 사용 보상을 하게 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사업비 증대로 인해 공공하수도 공익사업 추진이 불가할 수 있다.

#### □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 하수관로 신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2012년 10월 안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신청(2017.3.), 실시설계용역(2018.5.~2019.3.), 기술자문(2019.5.~2019.6.), 재원협의(2020.7.~2021.1.)를 거쳐 2021년 6월 착공 및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계획(2021.2.9. 안산시 OO과-0000)에 포함된 위치도 및 신청인의 토지 사용 동의를 위한 감리단의 안내(문자 메시지 등)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사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는 구역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너비 약 4m의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제공한 지리정보(GIS)에 따르면 해당 구역 지하에는 이미 상수관로 등이 매설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 관계 법령 등

- 「하수도법」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시정권고)

### □ 민원 제목 : ○○간이정류장 무정차에 대한 정차 재개 요청

### □ 신청 취지

- 서울과 충북혁신도시를 오가는 사건 시외버스노선의 운행경로중 중간정류지에 해당하는 ○○간이정류소 미정차를 변경인가하여 사건 시외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용주민의 교통편의성 확보를 위해 운경경로 복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민원요청에 따라 해당 운송사로 사건 정류소에 대한 경로변경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운송사로부터 안전 및 운행시간 증가 등을 이유로 정차운행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사건 정류소는 노선버스가 정차하기 힘든 환경으로 운송사가 제기하는 안전상의 문제점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고속도로상 노선버스 정차는 고속형 노선처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설치된 정류소를 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시외버스의 정차를 위해서는 사건 정류소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사실관계

- 운송사는 경기도 ○○시 ○○터미널에 주사무소를 두고 남○○ ↔ ○○ 간 시외버스 노선을 주로 운행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22. 5. 11. 경기도(○○○○과)로 ○○○○버스터미널과 ○○○○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사건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 4.]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1. 4.>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 판단 및 결론

- 그간 공공하수도 설치의 공익사업으로 인식되어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손실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수도 시설의 지하매설이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하수도 시설 설치에 따른 지하공간 사용에 관한 보상 논의가 널리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지하공간 사용과 관련한 법령·지침 등이 미비하여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나, 최근 하수도 시설의 유형 다양화와 하수도 시설 설치가 침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인식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사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시한 하수도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신설(2021.1.5. 시행)과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22.1.6. 시행) 되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 설치 시 사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화 된 보상기준과 방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피신청인에게 「안산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구역 내 위치한 안산시 ○○구 ○○동 ○○○-○번지 토지(전 492㎡)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사건 노선은 운송사가 경기도로부터 2015. 11. 인가를 받아 ○○ ↔(경기남부 경유)○○○○○○를 운행중인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으로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건 정류소 정차는 사건 노선 인가 초기부터 사업계획 변경인가 전(2015. 12.~2022. 5.)까지 경기남부 거주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차 운영되고 있었다.
- 운송사는 사건 정류소를 사용하는 이용객 규모(극소수)와 정차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로 인한 탑승객 불만 및 승무원 피로감 해소를 위해 사건 정류소 미정차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 2022. 5. 20. 운행경로 변경을 인가받아 2022. 6. 1.부터 변경된 운행경로로 사건 노선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

#### □ 관계 법령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 (생략)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7조(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의 인·면허)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연장·변경 및 운행횟수 증회 등의 면허·인가·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2. (생략)
3. 운행계통의 변경
  - 가. 운행계통의 통합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 나. 운행계통의 분할 및 단축은 이용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 □ 판단 및 결론

- 이 고충민원의 이유가 되고 있는 피신청기관의 사건 노선 변경 인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인가된 사항으로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다. 또한, 통학·통근·관광버스가 주로 정차하고 있는 사건 정류소의 특성 상 신청인들이 사건 노선을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인한 혼잡상황이 예견되는 바, 사건 노선의 정차를 재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용객과 승무원의 안전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운송사가 우려하는 문제점 역시 타당하다.
- 다만, 오랜시간 신청인들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용하던 사건 노선을 별도의 대안 마련도 없이 무정차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변경없이 정차하고 있는 다른 노선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노선에 대한 운행경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 피신청인에게 이용객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편의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간이정류소 경유 시외버스 정차가 재개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